

의안번호	2202950
의 퇴 인	박정하의원
회 답 일	2024. 8. 28.
추 계 번호	24C2999

한류산업진흥법안

【비용추계서】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한류진흥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소요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500만원, 2030년 5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1억 1,500만원(연평균 2,300만원) 이상으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임
 - 이에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안 제6조)	90	—	—	—	—	90	18
한류진흥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9조)	5	5	5	5	5	25	5
합 계	95	5	5	5	5	115	23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8조(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 및 한류산업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함	의무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3	안 제9조(한류진흥위원회)	정부는 한류산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한류산업 등의 진흥정책의 총괄·조정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한류진흥위원회를 둔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함 1. 기획재정부차관·교육부차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외교부차관·농림축산식품부차관·산업통상자원부차관·보건복지부차관·해양수산부차관·중소벤처기업부차관·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국가유산청장 2. 한국콘텐츠진흥원장,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장, 한국관광공사장,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 세종학당재단 이사장, 국가유산진흥원 이사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한국보건의산업진흥원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장, 한식진흥원 이사장 3. 한류산업 등에 관하여 전문성이 있거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의무규정
4	안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류산업 등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교육·연수·연구 및 그 밖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	재량규정
5	안 제11조(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 등이 한류산업 등과 관련한 국내외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한류산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음	재량규정
6	안 제12조(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한류사업자의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재량규정
7	안 제13조(한류산업 등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에 관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해외시장에서의 지식재산권의 출원을 지원하고,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8	안 제14조(한류산업 등 창업 활성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류산업 등에 관한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성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실시 사유)
1	안 제6조(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중 · 장기 기본계획의 수립 등)	○	
2	안 제8조(실태조사)	×	- 실시 중, 사업규모 확대 가능
3	안 제9조(한류진흥위원회)	○	
4	안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	- 실시 중, 사업규모 확대 가능
5	안 제11조(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6	안 제12조(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 외진출 지원)		
7	안 제13조(한류산업 등 관련 지식재산권 의 보호)		
8	안 제14조(한류산업 등 창업 활성화)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제정안의 일부 조항은 현재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제정안에 따라 사업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나 현 상황에서 확대되는 사업의 내용 및 범위 등을 알 수 없으므로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제정안과 관련된 사업의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2] 제정안과 현행 사업 비교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2024년)
안 제8조(실태조사)	해외한류실태조사 시행(3.6억원)
안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한류 콘텐츠 수출 전문인력양성(20억원) 콘텐츠 번역인력 양성(13.6억원)

조·항(조제목)	현행 사업(2024년)
안 제11조(한류산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콘텐츠수출마케팅 플랫폼 이용 고도화(30.5억원)
안 제12조(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	국제교류 활성화(16억원) 한류 문화교류 사업(31.4억원) 관계부처 해외홍보관 운영(110억) 관계부처 한류마케팅 지원(45억)
안 제13조(한류산업 등 관련 지식재산권의 보호)	해외 현지 출원 및 등록 지원 (25.7억원)
안 제14조(한류산업 등 창업 활성화)	한류 연계 협업 콘텐츠 기획개발지원(39억원) 관계부처 한류 박람회 개최(70억원)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개정안은 문화체육부장관이 한류사업자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안 제15조)하도록 하고 있으나, 부처 문의 결과 전담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이미 수행중으로 개정안 시행에 따라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제정안 부칙과 법률안 심사·의결 기간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중·장기 기본계획의 수립(안 제6조)

- 안 제6조에 따라 5년마다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책연구비 등 추가재정소요 발생 예상
- 기본계획은 제정안 시행 첫해에 수립하는 것으로 가정
-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비로 5년마다

9,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

- 문화체육관광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5조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 기본계획 수립비로 2023년도에 9,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표 3]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한류산업 등의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안 제6조)	90	-	-	-	-	9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한류진흥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조)

- 한류진흥위원회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민간위원에 대한 수당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가정
 - 회의장소 임차료나 지원인력 등 부대경비는 소요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한류진흥위원회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부차관 등 12명의 공무원과 12명의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등 공공기관의 장으로 규정한 제정안을 고려하여 민간위원 수는 5명으로 가정
 - 회의 횟수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연 4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가정¹⁾
 - 기획재정부의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참고하여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수당은 회당 25만원으로 가정
- 개정안에 따라 한류진흥위원회에 민간위원을 5명 위촉하여 매년 4회씩 회의를 개최하는 데 연간 500만원의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 $5명 \times 4회 \times 250,000원 = 5,000,000원$

1)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지역문화협력위원회는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연 4회 회의를 개최하였음

[표 4] 한류진흥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한류진흥위원회 설치·운영(안 제9조)	5	5	5	5	5	2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비용추계서의 추가재정소요액은 유사사례를 준용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실제 추가재정소요액은 달라질 수 있음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제정안의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이제정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제정	02-6788-3739	jejeong2@na.go.kr